KOSHA GUIDE

C - 13 - 2012

- (5) 자재를 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의 자재로서 그의 종류,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명기한 자재승인요청서를 감독 및 감리 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은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는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감독 및 감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부적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6) 자재는 가능한 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양 만큼 순차적으로 반입하되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여야하며, 부식, 마모, 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상태 감시, 악천후 시에는 작업의 중지,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8) 감독 및 감리자가 없는 현장인 경우에는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책임있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보존하여 두어야 한다.

4.4 근로자의 의무

- (1) 관리감독자가 지휘하는 안전한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작업 도중 불안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작업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보호구를 양호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4) 작업 중 이상 현상 또는 위험한 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 게 이를 알려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서 작업하여야 한다.